



12월 27일(목) 16:00 이후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

과장 임택진, 사무관 정성진
(044-200-2630, 2634)

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-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추진성과 -

- ▶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올해 11월까지 국민건의 총 2,631건 접수처리
- ▶ 국민 참여로 바뀐 ‘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주요사례’
 - 숙박체험이 금지된 한옥체험시설 숙박 허용
 - 이·미용사 외에도 머리감기 허용
 - 구내식당 건강기능식품 제공 허용
 -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차별 개선

□ 국무조정실(실장 노형욱)은 올해(‘18.2월~11월) ‘규제개혁신문고’(www.sinmungo.go.kr)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민생·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.

*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‘18년 1월까지 성과는 올해 3월 발표

○ 규제개혁신문고(이하 ‘규제신문고’)는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(제도)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국민 의견 수렴 창구입니다.

□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과정에서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·강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 왔습니다.

○ 먼저, 금년에는 규제신문고 운영의 근거를 기존 총리훈령에서 법률(행정규제기본법)로 상향 시켰습니다.

- 부처 1차 답변(14일 이내) → 부처 2차 소명(3개월 이내) →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의 3단계 검토 과정을 **법제화** 한 것이 특징입니다.
- * 행정규제기본법 개정('18.4.17 공포, '18.10.18 시행)

- 또한, **중전 부처·지자체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개선 국민 건의 접수창구를 규제신문고로의 일원화**를 추진했습니다.
- * 단계적 통합일정 : 중앙부처('17년 완료) → 광역단체('18년 완료) → 기초단체('19년, 226개)

□ 규제신문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1월 까지 총 2,631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해 처리 하는 등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의 대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□ 특히, 지난 발표('17.5월~'18.1월) 이후 금번('18.2월~11월)에는 국민건의 1,472건을 접수·처리 했습니다.

□ 이번에 개선된 주요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**위생·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별도 숙박업 신고 없이도 '한옥체험 시설'에서 숙박체험이 가능 하도록 개선합니다.**

◆ **한옥체험업 규제 합리화** (문체부/복지부)

- **기존** 한옥체험업(관광진흥법)에서 숙박영업을 위해서는 **별도 숙박업 신고**(공중위생관리법)가 필요하고, **미신고 영업시 단속 및 처벌대상**
 - * 숙박업 미신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 - 한옥체험시설은 대부분 **도시 주거지역**에 소재하고 있으나, **숙박업 신고는 도시 상업지역**에만 가능 → **신고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**

사 례

◆ **(지방 한옥마을)** 외국인 등 숙박을 하면서 한옥 체험을 희망하는 관광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, 한옥체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숙박업신고 없이는 **현행법상 정상적인 숙박영업이 불가**

- **개선** 한옥체험업의 **위생·안전규정을 별도 마련**토록 하고, 한옥체험시설에 대해서는 **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**하도록 개선
 - 한옥체험업 '**등록제**' 및 **위생·안전 기준 도입**
 - 관련제도 도입 전제로, **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**
 - * 「관광진흥법」시행령·시행규칙 및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시행령 개정 추진('19.6월)

☞ 법적 사각지대 해소로, **적정 요건을 갖춘 한옥체험시설의 안전한 이용** 가능

* 전국적으로 약 1,280개의 지자체 등록 한옥체험시설 존재 ('18년 기준)

② 이·미용실에서 이·미용사 면허소지자 이외에도 '머리감기'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◆ 이·미용사 업무 보조 범위에 '머리 감기' 추가 (복지부)

- **기존** '머리감기'는 이·미용사 면허 소지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 → 면허가 없는 종사자의 머리감기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대상

*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

사 례

- ◆ **(이·미용실)** 머리감기는 별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으나, 이·미용사의 업무범위로 규정되어, 면허소지자만이 할 수 있음. 이·미용사가 머리 감기를 하면 손님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머리감기만을 위하여 추가로 면허증 소지자를 채용하기는 비용 부담 증가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

- **개선** 이·미용사 면허소지자만 할 수 있었던 '머리감기'를 이·미용사 보조 업무범위에 추가
*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개정('18.10월 완료)

☞ 전국 이·미용업소 총 154,396개소(△이용업 17,853 △미용업 136,543) ('17년 기준)

③ 구내식당에서 별도의 '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절차' 없이도 식단에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제공이 허용되었습니다.

◆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 신고 규정 완화 (식약처)

- **기존** 구내식당(집단급식소)에서 건강기능식품*을 식단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가 필요

* 요구르트형 건강음료, 헛개·홍삼 드링크, 발포 비타민 등

- 이 경우 안전위생교육이수 등 영업자 준수 의무가 구내식당에 발생

사 례

- ◆ **(구내식당)** 건강기능식품(요구르트형 건강음료 등)을 식단에 포함하여 후식으로 제공하려 하였으나,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규제기관의 해석을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 음료제공 계획을 취소

- **개선** 구내식당의 특성을 감안, 식단에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대상에서 제외

* 건강기능식품법 유권해석 및 지자체에 영업신고 적용제외 안내 시행('18.10월 완료)

☞ 전국적으로 구내식당(집단급식소) 46,514개 존재('18년 기준)

④ 등록기간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운영됐던 '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'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
◆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차별 규제 완화 (환경부)

- **기존**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제도*를 운영하면서 발급대상이 지역별로 차량등록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(수도권: '05.1월~, 비수도권: '13.5월~)
 - * (대상) 전기차·수소연료전지차, 하이브리드차, 오염물질 저배출자동차 (혜택) 공공주차장 주차료 감면,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
- 동일한 저공해자동차라 하더라도 등록지역에 따라 혜택기회가 달리 적용되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 발생

사 례

◆ (지방거주 주민) '12년 전기차를 구매하였으나,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동일 차종의 차량은 저공해자동차 표지대상이고 비수도권지역에 등록한 본인 차량은 제외되어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불만 호소

- **개선** 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선(수도권·비수도권 : '05.1월~)
 - * 「대기환경보전법」개정 추진('19.6월)

☞ 해당기간('05.1월~'13.5월) 비수도권 판매·등록 저공해자동차 약 97만대

⑤ 고위험과 저위험 연구실로 구분하고, '저위험 연구실'에 대해서는 과도한 안전의무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합니다.

◆ 저위험 연구실 안전의무 규제 합리화 (과기부)

- **기존** 위험도와 관계없이 저위험 연구실(컴퓨터실습실 등)도 고위험 연구실(유해화학 실험실 등)과 동일하게 과도한 안전점검의무* 규제 적용
 - * 일상점검(매일), 정기점검(매년 1회) → 미이행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

사 례

◆ (대학 연구실) 다른 도구나 장비를 활용한 실험이나 실습 없이 단순 모니터, 자판으로 운영되는 컴퓨터실습실도 고위험 연구실과 동일하게 안전점검 등 과도한 의무 부과를 준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 본연의 연구활동 수행 애로 호소

- **개선** 위험도를 고려하여 고위험 연구실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저위험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의무 규제대상에서 제외
 - *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개정('19.6월)

☞ 안전의무 규제대상 연구실 전국현황 : 총 73,796개실(4,626기관) ('17년 기준)
 △대학 45,306(419) △연구기관 11,118(423) △기업부설 17,372(3,784)

⑥ 버려졌던 '폐치아'의 치과용 의료기기 원료로의 재활용을 허용합니다.

◆ 폐치아를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허용 (환경부)

- **기존** 치과에서 발치 등으로 발생하는 폐치아는 '의료폐기물'로 분류 → 재활용이 금지(본인·가족제외)되고 전량 폐기가 의무화
 - 폐치아를 활용한 임플란트 시술 등 **치아뼈 이식재(의료기기)**로 활용할 수 있는 **신기술 개발**되었으나, 의료기기의 **제품화 불가**
 - * 현재 의료폐기물 중 '태반'만 유일하게 재활용 허용(폐기물관리법)

사 례

◆ **(바이오 벤처기업)** '08년 폐치아를 활용한 뼈이식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'15년에는 정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었으나, 폐치아의 재활용 금지 규제로 지난 10년간 상용화에 필요한 후속 임상시험이나 제품화 및 수출 등이 불가

- **개선** 의료기기 등 특정목적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여 **폐치아의 재활용 허용**
 - * 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('19.6월)
- ☞ 치과 골이식재 세계시장 규모는 업계 추산 약 8조원(국내시장 6천억원) 예상 ('20년 기준)

□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**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** 예정입니다.

* 시행령 이하는 '19년 상반기, 법률은 '19년 내 완료 추진

○ 또한 내년에는 이미 완료된 중앙부처(41개)와 광역지자체(17개) 홈페이지의 신문고 연계를 **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**하겠습니다.

○ 아울러, 국민·기업 등을 대상으로 **규제신문고를 알리고,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**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.

□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개선과제의 규제 개혁을 통해 **'국민이 체감하고, 국민이 중심되는 규제혁신'**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.